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90호, 2025. 12. 2. 공포, 2026. 6. 3. 시행)됨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운송사업의 휴업·폐업 신고 시 위·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2호 중 “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”를 “(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1항) 중 “법 제23조제2항”을 “법 제23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및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각각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은 것을 확인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하며, 그 말소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실효된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

별표 3 제11호의 처분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란 중 “180”을 “60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“(제33조의2제1항 관련)”을 “(제33조의2제3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사업의 휴업·폐업 신고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(<u>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</u>) ③ (생략) 제33조의2(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) <신설>	제26조(사업의 휴업·폐업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(<u>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</u>) ③ (현행과 같음) 제33조의2(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) ① <u>한국교통안전공단</u> 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은 것을 확인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하며, 그 말소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·③ (생략)

④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 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

②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실효된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3조제3항-----

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⑥ -----

--- 제5항-----

⑦ ----- 제5항--

한 다.

---.